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14차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예외적 직무감찰〉

■ 각규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190호)

2025. 1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혜 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광규택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3. 20.
3. 회 부 일 : 2025. 3.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

1. 제안이유

2022년 공정성과 중립성이 핵심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 사무총장의 자녀가 특혜채용되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체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개방형 감사관을 도입하였음에도 특별채용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음.

결국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0년간 167회의 경력경쟁채용 과정에서 가족·친척 채용을 청탁하거나 면접점수를 조작하는 등 규정 위반 662여건이 적발되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를 사실상 ‘가족회사’처럼 운영해 왔다는 것이 확인되었음.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시·견제할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적 여론이 증가하고 있음.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

에서의 배제가 곧바로 부패행위에 대한 성역의 인정으로 호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부패행위에 대한 감시와 통제는 어느 영역에서나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음.

이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소관 사무와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 필요한 경우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고, 이에 대해 감사원이 의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외부 감시·통제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 의뢰에 대해 직무감찰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뢰받은 범위에 속하는 사무 및 직무에 대해 감찰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제5항 신설).

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광규택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 개정안은 감사원이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원 감사를 의뢰 또는 요청 받은 경우, 이 법에 따른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닌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의뢰 또는 요청 받은 감사 대상 범위에 속하는 사무 또는 직무에 대하여 감찰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임.

현행	개정안
제24조(감찰 사항)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찰한다. 1.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 3.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23조제7호에 규정된 자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임원 및 감사원의 검사대상이 되는 회계사무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직원의 직무	제24조(감찰 사항) ① ~ ④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4.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무와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 ② (생략) ③ 제1항의 공무원에는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④ (생략) <u><신설></u>	⑤ <u>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원 감사를 의뢰 또는 요청 받은 경우, 감사원은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의뢰 또는 요청 받은 감사 대상 범위에 속하는 사무 또는 직무에 대하여 감찰할 수 있다.</u>

나. 구체적 검토

□ 동 개정안의 제안이유·주요내용 및 관련 개정안¹⁾을 종합적으로 고

1)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9005호, 발의일자: 2025. 3. 17. 광규택의원 대표발의)」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계획을 작성하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5조의4 신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에 대해 추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결로 감사원에 외부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원은 감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안 제15조의5 신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및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려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체 감사 제도를 개편하려는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을 전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에 대해 감사 의뢰를 한 경우 감사원이 의뢰받은 범위에 속하는 사무 및 직무에 대해 감찰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현행 「감사원법」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 개정안의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 그러므로 동 개정안을 문리적으로 해석하면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원 감사를 요청 또는 의뢰한 경우 현행법에 따라 명시적으로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도 예외적으로 사무 또는 직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해석됨.
- 헌법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감사원을 설치하고 있고(헌법 제97조²⁾), 이 법은 감사원이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와 그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에 대해 감찰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감찰 범위에서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의 직무를 명문으로 제외하고 있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5조의6 신설).

2) 「대한민국헌법」 제97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음(제24조제1항·제3항3)).

-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 및 그 제외에 관한 제24조는 1963. 12. 17. 이 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⁴⁾하였으며, 1995. 1. 개정으로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이 제외 대상으로 추가되었음⁵⁾⁶⁾.
-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를 다룬 헌법재판소 2025. 2. 27. 선고 2023헌라5 전원재판부 결정은,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⁷⁾하다고 하였으나, 2025. 10. 현재 현행 「감사원법」은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
- 3) 「**감사원법**」 제24조(감찰 사항) 제24조(감찰 사항)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찰한다.
1.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
 3.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23조제7호에 규정된 자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임원 및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되는 회계사무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직원의 직무
 4.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무와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
- ③ 제1항의 공무원에는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 4) 「**감사원법**」(법률 제1495호, 1963.12.13. 폐지제정, 1963.12.17. 시행)
제24조(감찰사항) ① 감사원은 다음 사항을 감찰한다.
1.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
 3.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
- ③ 제1항의 공무원에는 국회 및 법원에 소속한 공무원을 제외한다.
- 5) 「**감사원법**」(법률 제4937호, 1995.1.5. 일부개정, 1995.1.5. 시행)
제24조(감찰사항) ③ 제1항의 공무원에는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을 제외한다.
- 6) 한편, 위 개정법률의 성립 과정에 관한 제171회국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1호(1994. 12. 22.)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과 더불어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감찰 대상 제외 명문화와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확인됨.
- 7) “정부와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는 물론 이들 헌법기관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설치된 선거관리위원회도 헌법 제97조가 정한 피청구인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 다른 법률에 따라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가 감사를 의뢰·요청한 경우 감사원이 예외적으로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사무 또는 직무감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은, 「국회법」, 「법원조직법」 및 「헌법재판소법」 등 관련 법률에 감사원 감사의 의뢰·요청 제도가 규정되는 경우 그에 따른 부수적인 법률 정비로 볼 수 있을 것임.

○ 한편, 제안이유 등과 같이 동 개정안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예외적인 사무 또는 직무감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 소속 공무원에 대해 감사원 감사요청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관련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한 부수적인 법률 정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이러한 취지로 해석하는 경우에도, 신설하려는 안 제24조제5항의 법문상(“제1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3항에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명시적으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함께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 관계 기관 의견

□ 먼저, 감사원은 개정안의 입법 목적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감사원 감사와 관련한 현행법 체계와 상충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임.

○ 감사원은 개정안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의뢰·요청받은 내

용”에 따라 감사원이 발동할 수 있는 직무감찰 권한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예외적인 직무감찰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헌법 제100조⁸⁾가 감사원의 직무 범위 및 감사대상 공무원의 범위 등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취지와 상충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다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정안의 취지와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감사원이 외부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최근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정 취지⁹⁾에 전면 배치되며, 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라 부여받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적 지위를 침해할 우려 등이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055

8) 「대한민국헌법」 100조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9) 헌법재판소 2025. 2. 27. 선고 2023헌라5 전원재판부 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청구인의 헌법상 지위와 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의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에게는 헌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하여 행정부 등 외부기관의 부당한 간섭 없이 선거관리사무는 물론 인사·조직운영·내부규율 등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